

감 사 원

심 사 결 정

분 류 번 호 2016-심사-574

제 목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A
서울특별시 ○구
대리인 공인노무사 B

처 분 청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고 C(이하 “재해자”라 한다)의 배우자이며, 재해자가 ■■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 6. 10. 15:00경¹⁾ 자택에서 사망하자, 재해자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2016. 1. 5. 처분청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재해자의 사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의 판정에 따라 2016. 3. 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시체검안서상 사망 추정 시각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취지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재해자의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9시간으로 심장 질병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시간(60시간)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나, 평소 업무량이 과다한 가운데 연구원 개원 25주년 행사 준비 등에 따른 특별업무의 가중과 부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 잦은 휴일 특근에 따른 휴무시간의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만성과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발병 전일 자정이 지난 24:47까지의 특근은 재해자의 신체에 과중한 부담을 주어 퇴근 후 이미 구토와 가슴 통증 등 급성 심근경색 증상이 발현된 상태에서 재해 당일 10:00경 원장으로부터 개원 25주년 행사 준비와 관련하여 질책을 받음으로써 급성 심근경색 증상을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은 급성과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건의 다툼은 재해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재해자는 연구원 창립 멤버로 1990. 9. 1. 입사하여 2015. 6. 10. 사망할 때까지 24년 9개월을 근무하였으며, 2013. 12. 1. <본부장에 보임되어 원장을 보좌하고, 기관 경영 및 기획업무를 총괄하며, 인사위원회 등 6개 위원회의 위원장과 대정부·대국회 수감 및 협력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2) 재해자는 사망 당시 만 57세의 기혼 남성으로, 키는 174.1cm이고, 체중은 70.2kg이며, 담배는 하루 반 갑에서 한 갑 정도 피웠고, 음주는 하지만 과음은 하지 않았으며, 운동이나 취미 활동은 하지 않았고, 연구원이 2014년 1월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전한 후 서울에 있는 가족들과 떨어져 세종시에서 혼자 지내면서 주말 부부 생활을 하여 왔다.

(3) 2015. 6. 11. 작성된 재해자의 시체검안서에 따르면 사망의 원인은 “미상”, 사망의 종류는 “기타 및 불상”으로 되어 있다.

(4) 재해자는 재해 당일 복통과 구토 등을 호소하며 2차례 병원에 내원하였고, 진료기록은 [표 1]과 같다.

[표 1] 재해 당일 재해자의 진료기록

진료일시	의료기관명	진료내용
------	-------	------

2015. 6. 10. 08:33	▣▣▣대학교병원 ■●의원	■ 증상:어제부터 배가 아프다, 구토 2번 했다, 열감은 없다, 설사는 하지 않았다, 윗배가 쥐어짜 듯 아프다 ■ 진단: 기타 급성위염
2015. 6. 10. 10:53	▣▣▣내과의원	■ 증상: 어제 저녁에 돈가스 과식, 밤에 구토 2회, 가슴이 답답하고 급체한 느낌, 속 쓰림-설사-오심-흉통 ■ 참고: 흡연 하루 반 갑 정도, 올해 1월 위용종 제거, 평소 위장이 좋은 편이 아니다 ■ 진단: 상세불명의 위염

(5) 2006. 6. 1.부터 2015. 6. 10.까지 재해자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중 위장 및 심장 질병 등과 관련한 수진내역은 [표 2]와 같다.

[표 2] 위장 및 심장 질병과 관련된 재해자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진료일자	의료기관명	상병명
2006. 9. 9.	▣▣▣병원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2008. 4. 18.	◇◇의대 ▣▣▣병원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의 위궤양
2008. 5. 13.		심혈관기능 검사의 이상 결과
2010. 9. 19.	▣▣▣병원	감염성 기원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결장염
2013. 2. 26.	◆◆한의원	명치 통증
2013. 2. 27.		
2013. 3. 12.	▣▣▣병원	만성 위축성 위염
2014. 10. 1.	●●병원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2014. 10. 14.		상세불명의 위염
2015. 6. 10.	▣▣▣대학교병원 ■●의원	기타 급성위염
	▣▣▣내과의원	상세불명의 위염

(6)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재해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재해자의 건강진단 결과

검진일자	검진기관명	주요 소견
2006. 4. 18.	☒☒병원	■ 심전도: 이상 소견 관찰(심장내과 진료 필요) ■ 간기능 검사: GGTP(49H)증가 ■ 대사기능 검사: 혈중 중성지방 증가(179H), 혈중 콜레스테롤 증가(총 콜레스테롤 217mg/dl)
2008. 4. 10.		■ gGt 간기능 수치 높음 ■ 이상지질혈증 ■ 흉부X선 검사결과 폐 염증 흔적 ■ 심전도 소견: 좌각 전/후 섬유속 차단, 비특이성 ST-T분절 이상/비특이성 T분절 이상
2010. 3. 31.		■ 이상지질혈증 ■ gGt 간기능 수치 높음 ■ 심전도 소견: 좌각 전/후 섬유속 차단, 비특이성 ST-T분절 이상/비특이성 T분절 이상
2012. 4. 3.	◎◎병원	■ 심전도 소견: 좌각 전/후 섬유속 차단 ■ 이상지질혈증 ■ gGt 간기능 수치 높음 ■ 간낭종(초음파 소견)
2014. 10. 1.	●●병원	■ (혈액) 간기능 주의,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총 콜레스테롤 269mg/dl, LDL156mg/dl) ■ (초음파) 경증 지방간

(7) 처분청 자문의사는 재해 전 특별한 코로나 심한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재해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우므로 판정위원회에 상정을 요한다고 2016. 2. 11. 소견을 밝혔다.

(8) 처분청이 조사한 재해자의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은 [표 4]와 같다.

[표 4] 재해자의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²⁾

날짜	요일	총 근무시간	야간근무시간 ³⁾	일일 세부 업무내용 및 구체적인 변화 내용
6. 10.	수	03:00	00:00	■ ▽▽실장이 10:30경 결재를 받으러 본부장실 방문 시 재해자가 회의 테이블에 비스듬히 앉아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고 병원 진료 권유 ■ 재해자는 10:40경 연구원을 나간 뒤 다시 연구원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 연락도 되지 않았으며, 다음 날 자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됨
6. 9.	화	14:47 ⁴⁾	02:47 ⁴⁾	■ 오전에는 결재 및 업무보고 등 수행 ■ 오후 시내 출장(13:00~18:00, ▼▼ 회의)

(9) 처분청이 조사한 재해자의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상황은 [표 5]와 같다.

[표 5] 재해자의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상황⁵⁾

날 짜	요일	총 업무시간	야간업무시간	일일 세부 업무내용 및 구체적인 변화 내용
6. 9.	화	14:47 ⁴⁾	02:47 ⁴⁾	■ 오전에는 결재 및 업무보고 등 수행 ■ 오후 시내 출장(13:00~18:00, ▼▼ 회의)
6. 8.	월	08:00	00:00	■ '16년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 심의 관련 ▶▶부 ▷▷과 예비검토 대응을 위한 자료 검토
6. 7.	일	00:00	00:00	휴무일
6. 6.	토	00:00	00:00	휴무일

- 2)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및 고용노동부 고시(제2013-32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따르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되어 심장 질환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봄
- 3) 22:00 이후 다음 날 06:00까지의 업무시간
- 4) 당초 처분청은 재해자의 업무시간을 산정하면서, 재해자의 출입이력보고서에 기재된 ① 4. 7.(화) 오후 12:59, ② 5. 11.(월) 오후 12:34, ③ 5. 13.(수) 오후 12:50, ④ 5. 25.(월, 석가탄신일) 오후 12:13, ⑤ 6. 9.(화) 오후 12:47 등 5건에 대하여, 위 시간은 모두 낮 12시를 의미하는데도 밤 12시로 오인하여 업무시간과 야간 업무시간을 잘못 산정하였으나, 감사원 심사청구 이후 검토 과정에서 당초 재해자의 업무시간 산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업무시간을 다시 산정하였으며, 재산정 결과에 따르면 재해일 전일(6. 9.) 재해자의 업무시간은 8시간 10분이고, 야간업무는 하지 않았음
- 5) 산재법 시행령 [별표 3]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단기 과로)되어 심장 질환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봄

6. 5.	금	08:00 ⁶⁾	00:00	■ '15. 6. 2. 부서장 회의 시 원장 지시사항 수행 ■ 개원 25주년 기념 ■행사 계획안 수립
6. 4.	목	08:00	00:00	■ 연구원 임금피크제 추진계획안 수립
6. 3.	수	03:00 ⁷⁾	00:00	■ 숙소 이전(ㅉㅉ에서 정부세종청사 옆 오피스텔로 이전)
		41:47 ⁸⁾		■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 41:47⁸⁾ ■ 발병 1주 전 11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39:01⁸⁾ → 일상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미 증가 ⁸⁾

(10) 감사원 심사청구 이후 처분청이 재산정한 재해자의 발병 전 3개월 이내 근무상황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자의 발병 전 3개월 이내 근무상황은 [표 6]과 같다.

[표 6] 재해자의 발병 전 3개월 이내 근무상황

발병전 (12주)	기 간	총 업무시간			4주간별 업무시간 내역	
		처분청	청구인 (주장)	청구인 (오류정정) ⁹⁾	처분청	청구인(오류정정) ⁹⁾
1주간	6. 3.~6. 9.	38:21	56:22	49:35	총 업무시간 161:28 (1주 평균 40:22) ※ 6. 3.(수) 오전, 5. 15.(금) 휴가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미 초과	총 업무시간 219:28 (1주 평균 54:52)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미 초과
2주간	5. 27.~6. 2.	47:02	59:15	59:15		
3주간	5. 20.~5. 26.	40:31	57:52	51:39		
4주간	5. 13.~5. 19.	35:34	65:49	58:59		
5주간	5. 6.~5. 12.	39:39	67:32	60:58	총 업무시간 156:57 (1주 평균 39:14) ※ 5. 8.(금) 휴가	총 업무시간 225:03 (1주 평균 56:16)
6주간	4. 29.~5. 5.	30:57	57:23	51:00		
7주간	4. 22.~4. 28.	45:39	60:25	60:41		
8주간	4. 15.~4. 21.	40:42	52:24	52:24		
9주간	4. 8.~4. 14.	40:00	53:00	53:00	총 업무시간 163:17 (1주 평균 40:49)	총 업무시간 221:50 (1주 평균 55:28)
10주간	4. 1.~4. 7.	40:00	69:24	62:25		
11주간	3. 25.~3. 31.	41:04	54:55	54:55		

6) 감사원 심사청구 이후 처분청이 재산정한 재해자의 업무시간은 8시간 2분임

7) 감사원 심사청구 이후 처분청이 재산정한 재해자의 업무시간은 6시간 9분임

8) 감사원 심사청구 이후 처분청이 재산정한 업무시간에 따르면 재해자의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38시간 21분, 발병 1주 전 11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18분이 되어 재해자의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일상 업무시간과 비교해 오히려 감소하였음

12주간	3. 18.~3. 24.	42:13	51:30	51:30		
계		481:42	705:51	666:21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40:08 ¹⁰⁾	58:49	55:32		

(11) 판정위원회는 재해자의 사망 경위와 업무 내용, 관련자 진술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해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고 과로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업무 부담을 객관화하여 인정하기는 어렵고, 단기·만성적으로 과로에 노출되었거나 신체가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과 <본부장이라는 재해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던 재해자가 숙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다수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2016. 2. 29. 재해자의 사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12) 청구인은 감사원 심사청구서가 감사원에 접수된 후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D이 2016. 4. 27. 발행한 업무관련성평가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7]과 같다.

[표 7] 업무관련성평가 결과

9) 낮 12시를 밤 12시로 오인한 5건 등 7건에 대해 오류 정정

10) 산재법 시행령 [별표 3]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만성 과로)하여 심장 질환이 발병한 경우 업무와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봄

진단명	급성 심근경색
소견	- 환자의 사망 전 증상 호소 내용과 연령을 고려할 때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 사망 전 근무 내용을 볼 때 상당한 수준의 장시간 노동이 확인되고, 이러한 장시간 노동이 현재의 관련 기준인 60시간에 일부 못 미치지만, 책임의 과다, 직장 이전에 따른 가족 지지의 부족, 휴일 근무 등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그 부담의 정도는 상당하였다고 판단됨 - 환자의 사망은 과로에 의해 촉발된 심근경색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산재법 제5조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산재법 제5조 제1호 및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그리고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며,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살피건대, 인정사실 “(1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재해자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받아보기 위하여 산재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였고, 판정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

인이 이 사건 처분의 부당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반박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재해자의 사망의 원인이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전제하에 이러한 급성 심근경색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재해자는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인정사실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시체검안서에 사인은 “미상”으로 되어 있으며,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재해자의 사망의 원인을 급성 심근경색으로 선불리 추단할 수는 없고,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¹¹⁾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인정사실 “(1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업무관련성평가를 인정하여 재해자의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으로 보고, 인정사실 “(10)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자의 업무시간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재해자의 출입이력 중 낮 12시를 밤 12시로 오인하여 업무시간을 과다 산정한 위 5건의 오류를 정정하고 나면, 인정사실 “(8)~(10)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재해자에게

11)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정을 넘긴 시각까지의 야간업무는 없었으므로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지도 않았으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거나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는 등 재해자의 근무상황은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업무상 질병(심장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재해자의 사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 07 . 14 .

[별지]

관계 법령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 7. (생략)

○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 다. (생략)

(이하 생략)

○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①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둔다.

②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과 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하 생략)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하 생략)